

대법원 2015. 2. 12 선고 2014다7694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5. 2. 12 선고 2014다76946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9. 26 선고 2013나66125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0. 31 선고 2012가소816555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

피고, 상고인 겸 피상고인 A

판결 선고 2015. 2. 12.

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9. 26. 선고 2013나66125 판결

주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

소액사건인데,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
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이인복

대법관김용덕

주심대법관고영한

대법관김소영